

## □ 病院税務相談 □

상  
담

柳 泰 玎 〈公認会計士·대양회계법인〉  
鄭 基 善 〈公認会計士·서울대병원 부설  
병원연구소 자문연구위원〉

### 公益事業 出捐에 대한 税制上의 유의사항은?

問 公益事業에 대한 出捐은 贈與税 과세표준에 不算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相続, 贈與税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하여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S병원〉

① 상속세 및 증여세가 非課稅되는 출연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② 위 公益事業의 목적사업을 출연자의 간접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자(理事会)의 구성에도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③ 재산을 출연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報告書를 제출해야 합니까?

④ 출연받은 재산을 出捐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의 제한내용은 무엇입니까?

答 ①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出捐財產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国家 또는 公共團體에 기부한 재산
2. 民法 제966조(親族会)에 규정하는 재산
3. 国民福祉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变화 일시금
4. 公務員年金法 또는 私立学校教員年金法

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 遺族年金附加金, 遺族年金一時金 또는 遺族補償金

5.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 遺族年金附加金, 遺族年金一時金, 遺族一時金 또는 災害補償金

6.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補償年金, 遺族一時金 또는 遺族特別給與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수증자), 사망인(증여자)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히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公益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은 과세표준에 不算入되므로 그 공익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익사업의 종류

1. 종교의 보급, 기타 教化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설립한 社會福祉法人이 운영하는 사업

3. 更生保護法에 의하여 설립한 更生 保護수가 운영하는 사업

4. 教育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 公益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改正 76. 4. 15)

6. 韓国科学院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

7.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無料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예술,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10. 医療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1. 医療保險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12.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1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1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으로 비과세 되는 내용.
  1. 民法上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또는 장학금
  2. 罷災救濟金品, 기타 불우한 사람을 돋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
  3. 政党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遺贈한 재산
  4.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6. 근로자의 복지증권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다만 위 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합니다.
- ② 공익사업과 교육기관의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 ▲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理事가 되어있는法人(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理事事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의료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의료인」이라 한다)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法人의理事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理事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理事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③ 재산을 출연받은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한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의 공익사업 및 추가출연의 공익사업

1. 출연재산 명세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 포함) 사용계획서

▲ 결산보고일(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의 제출서류

1.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 보고서

2.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주무부장관에 제출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의 신고결산서류)

④ 기본적으로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출연받은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치 아니한 때(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외)

2. 출연재산운용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의 80% 이상을 결산일 후 1년

##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算式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주무부장관 인정 경우 제외

[재무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分을 제외한다)의 평가액]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1년만기의 정기예금이자율] × 50%

4.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

5.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受惠者的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設立許可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해당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백80일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합니다.

이상의 상담내용 및 실무상 추가 질의는 書信으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담당 柳泰鉉〉

##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法人税 신고사항 종류?

問 醫科大學 附屬病院의 경우 금년 3월 1일부터 法人税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申告事項으로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서울 K대학 병원)

答 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그동안 法人税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1985년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學年度부터는 公共法人과 같이 法人税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醫大病院은 이와같이 法

人税가 減免되다가 課稅됨에 따라 校校法人은 그대로 非課稅대상이나 醫大病院은 法人税가 과세되는 收益事業으로 분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收益事業에 해당하게 된 날, 즉 1985년 3월 1일을 收益事業開始日로 보아 法人税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에 貸借對照表, 財產目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法人的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관리책임자의 성명
4. 固有事業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또한 在庫資產評價방법도 法人税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收益事業을 개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각 事業年度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在庫資產評價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이 모두 경과하였읍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申告를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法人税法 제50조 제7항 1호에 의하면 新設法人과 새로 收益事業을 개시한 非營利法人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申告期限까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85年度分 法人税 신고시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醫大病院들도 收益事業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中間予納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法人税法 제30조 제1항 但書에 의하면『... 다만, 中間予納稅額의 납세의무가 있는 内國法人이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

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4 항에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事業年度로 보아 法人税法 제 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法人税額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따라서 醫大病院은 1985년 9월 30일까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醫大病院의 경우는 위의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른 醫療法人이나 財團法人 病院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결산상 손익에 益金과 損金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른 제 문제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되는 例規通牒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1264. 21-3148. (1984. 10. 4)

제목 公共法人的 중간예납 및 재고자산평가 방법 등 신고에 관한 질의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8조 제 1 항 별표 81호 공공법인의 85. 1. 1 이후 개시연도에 대한 법인세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30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는 법인세법부칙(법률 제3473호, 81. 12. 3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수익사업 개시일로 보아 동법 제29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 7 항 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註)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은 이미 相談한 내용 중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바뀌게 된 내용과 相談者の 잘못으로 잘못 상담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984年 11月号 : 法人形態의 病院도 利益準備金을 적립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相談

1984년 9월 1일부터 改正되어 시행된 商法 제458조에서는 『會社는 그 資本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每決算期의 금전에 의한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企業會計基準도 이에 따라 개정되어 같은 방법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제108조 제 3 호의 (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法人形態의 病院은 非營利法人으로 분류되고 있어 配當의 지급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利益準備金은 앞으로는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 1984年 12月号 : 法人形態의 病院에서 基本財産으로 출연한 土地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特別附加税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法人税法 제59조의 3 제 1 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되면 特別附加稅만이 면제되어 防衛稅는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조항을 보면 『宗教의 보급·기타 教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法人(法人格없는 社團·財團·기타 團體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土地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은 特別附加稅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중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病院이 위치해 있는 병원부지를 의미하며, 만약 병원이 타지역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처분된 土地全額이 이전된 병원부지의 매입에 사용되어야 하며 處分益이 큰 경우에는 固有目的事業인 병원건물신축·의료기기의 취득 등에 사용되어야만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事例는 私立學校의 경우 여러 事例가 있습니다. 따라서 病院이 위치한 부지가 아니고 타지역에 위치한 土地를 매입한 경우 이를 처분하였다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鄭基善) \*